

「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 불복청구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세액 기준 상향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(안 제9조)
 - (당초) 1천만원 → (변경) 2천만원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, 제6조, 제9조~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과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, 띄어쓰기 및 용어 표현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로, 현행 조례는 불복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이에,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제도가 적용되어 불복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,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되고, 납세자와 행정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안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정대리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